

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 산 시 장



2020년 11월 25일

군산시 훈령 제386호

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별지 :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[별표4]

실 적 가 점 기 준 (제11조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가점	비 고
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유 공	○ 제도·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○ 경영수익사업 시행, 업무개선 등으로 세수증대 - 5억원 이상 - 1억원이상 ~ 5억원미만 - 3천만원이상 ~ 1억원미만	1.0 0.8 0.4	
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	○ 신규 국가사업 발굴 유치(증빙자료 제출, 년 1회 11월말 평정시만 적용) - 300억원 이상 - 100억원 이상 ~ 300억원 미만 - 1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	1.0 0.8 0.6	
창안제도 우 수	○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자 - 대통령 이상 - 국무총리 - 장 관 - 도 지 사 - 시 장	1.5 1.3 1.2 1.1 1.0	
업무추진 유 공	○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(계장 및 담당자 각 1명) - 중앙 단위 · 최 우 수 · 우 수 - 도 단위 · 최 우 수 · 우 수 ○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(계장 및 담당자 각 1명) - 예산 확보(국·도비) ·50억원 이상 ·40억원이상 ~ 50억원미만 ·30억원이상 ~ 40억원미만 ·20억원이상 ~ 30억원미만 ·1억원이상 ~ 20억원미만	0.8 0.6 0.6 0.4 1.0 0.8 0.6 0.4 0.2	
격무부서 근무 가점	○ 격무부서 근무 - 1년이상 근무자 0.5점 - 1년초과 매6월마다 0.5점씩 가산 - 격무부서 : 체육진흥계, 대중교통계, 택시화물계, 교통지도계, 청소행정계, 보육지원계, 장애인복지계, 장애인시설계 <b>장묘시설계, 도로관리계, 박물관운영계</b> - 가점대상자 :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	2점한도	

항 목	세 부 항 목	가 점	비 고
과건 가점	○ 중앙부처, 원거리(전라북도 외 지역) 과건자 (교육 과건 제외) - 6월이상 근무자 0.5점 - 1월 초과 매6월마다 0.5점씩 가산	2점한도	
시정발전	○ 다자녀 출산 - 3자녀 출산시 0.5점, 4자녀 이상 출산시 1점 - 2017.1.1. 이후 출산(입양 포함)에 의해 3자녀 이상인 공무원(부부공무원 각각 부여)	1점 한도	
적극행정 우 수	○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- 최우수 - 우 수 - 장 려	1.0 0.8 0.6	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4] 실적가점기준(제11조 관련)			[별표4] 실적가점기준(제11조 관련)		
항 목	세 부 항 목	가 점	항 목	세 부 항 목	가 점
격무부서 근무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격무부서 근무</li> <li>- 1년이상 근무자 0.5점</li> <li>- 1년초과 매6월마다 0.5점씩 가산</li> <li>- 격무부서 : 체육진흥계, 대중교통계, 택시화물계, 교통지도계, 청소행정계, 보육지원계, 재활복지계</li> <li>- 가점대상자 :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</li> </ul>	2점 한도	격무부서 근무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격무부서 근무</li> <li>- 1년이상 근무자 0.5점</li> <li>- 1년초과 매6월마다 0.5점씩 가산</li> <li>- 격무부서 : 체육진흥계, 대중교통계, 택시화물계, 교통지도계, 청소행정계, 보육지원계, 장애인복지계, 장애인시설계, <b>장묘시설계, 도로관리계, 박물관운영계</b></li> <li>- 가점대상자 :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</li> </ul>	2점 한도

군산시 공고 제2020-2387호

##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(변경)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25일

## 군 산 시 장

1. 목 적 :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.
2. 행정예고 기간 : 2020. 11. 25. ~ 2020. 12. 16.(21일간)
3. 의견제출 기간 : 2020. 11. 25. ~ 2020. 12. 16.(21일간)
4. 공고방법 :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관련근거
  - 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)
  - 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  - 다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

6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기한 : 2020년 12월 16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63-454-3829)

라. 제출처 :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(우)54078

마. 문의처 : 군산시청 안전총괄과(063-454-3863)

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7.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지

지구명	위치	지정(변경)내용			지정사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㎡)		
송창2 지구	전라북도 군산시 송창동 3-24일원	붕괴 위험	가	6,200	◦ 지반상태가 불량하고 사면 유실피해가 상습 발생하는 지역으로 연립주택이 인접하고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위험 상존	

8.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예산 (백만원)	사업내용	비고
송창2 지구	'22 ~	3,000	◦ 사면정비 및 주민이주 등	

※ 사업시기는 예산(국·도비)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

- 붙임 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각1부.  
 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1]

# 송창2지구 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(예정) 현황

## I. 자연재해위험개선(예정)지구 현황

### □ 대상지구 개요

- 대상지구명 : 송창2지구
- 위험지구 지정개요
  - 유형 및 등급 : 붕괴위험지구, 등급 : 가
  - 지정면적 : 6,200m<sup>2</sup>

### □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

- 위험요인 : 급경사면 절개지에 83년 건축된 노후연립이 위치해 위험이 상존하며, 사면 붕괴시 인접 연립주택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
- 피해주기 : ‘11. 7. (일우량 320.5mm/일, 최대시우량 44.0mm)  
‘18. 8. (일우량 192.7mm/일, 최대시우량 37.5mm)

## II. 과거 피해현황

### □ 과거 피해현황

일 시	피해개요		조치사항
	원 인	내 용	
2011. 7. (일우량 320.5mm, 최대시우량 44.0mm)	집중호우	시가지(5.66ha) 침수 농경지(9.11ha) 침수 사면유실	응급복구
2018. 8. (일우량 192.7mm, 최대시우량 37.5mm)	집중호우	사면유실	응급복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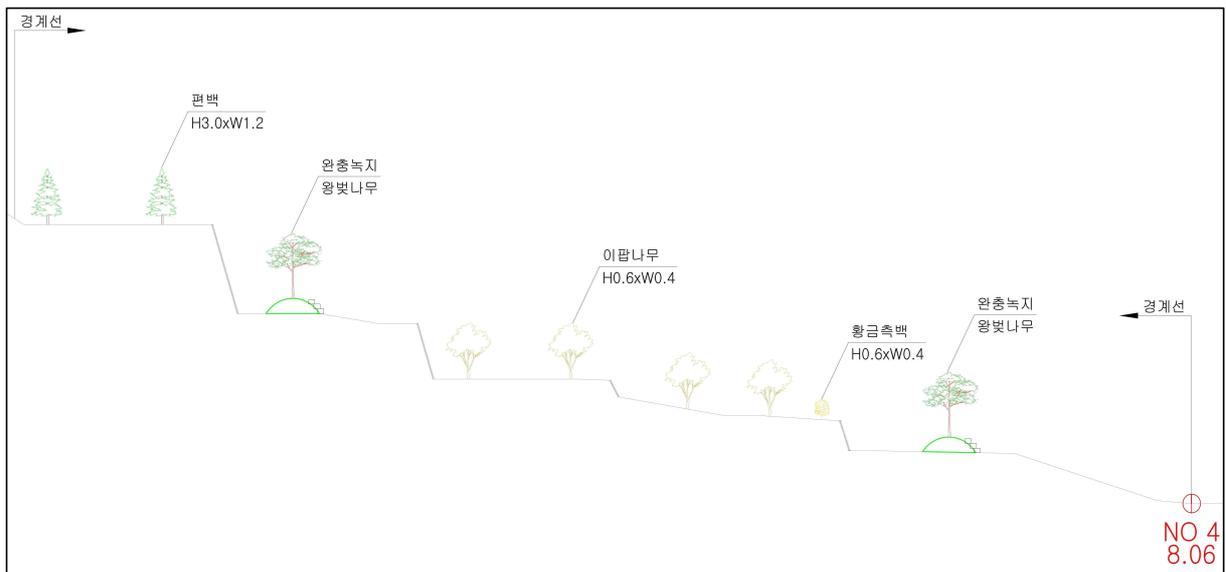
### IV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

#### □ 정비사업 추진계획(안)

- 사업량 : 주민이주 및 사면정비 등
- 사업비 : 3,000 백만원 (국비 1,500 지방비 1,500)
- 연차별 추진계획

구분	총 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사업내용	-	실시설계 주민이주	사면정비 가옥철거	사면정비
사업비	3,000	1,000	1,000	1,000
국 비	1,500	500	500	500
지방비	1,500	500	500	500

#### □ 사업계획 단면도(안)



#### □ 정비효과

- 인명보호 : 60명
- 건물보호 : 25동(이주)
-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: 13ha(시가지 13ha)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<b>송창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</b>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군산시장 귀하

#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